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7월 일 (제 292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7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연월일 : 2010. 7.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함.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
-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나.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부칙 제3조)

-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2)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3)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
-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10)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1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
- 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일부개정한다.

-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각각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

"으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각각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⑦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예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로 각각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각각 한다.

⑫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7조 중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9조의1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